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제안년월일 : 1999. 1. 21

제안자 : 기획행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도의 물품관리조례중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의 일부조문중 “직할시·도(시·군 포함)” ⇒ “광역시·도(시·군·자치구 포함)”로 자구수정.
(안 제16조 제3항 제1호 - 제2호)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제3항 제1호중 “직할시·도(시·군 포함)와”를 “광역시·도(시·군·자치구 포함)와”로 하고 동조 제3항 제2호중 “직할시·도(시·군 포함)에”를 “광역시·도(시·군·자치구 포함)에”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 - ② 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<u>1. 동일 직할시·도(시·군 포함)와 정부 각 부처, 타 특별시·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</u> <u>2. 동일 직할시·도(시·군 포함)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</u>	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 - ② (현행과 같음) ③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1.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2. _____ _____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 활용이 가능한 물품	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 - ② (현행과 같음) ③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1. _____광역시·도(시·군·자치구 포함)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2. _____광역시·도(시·군·자치구 포함)에 _____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이 물품으로서 재 활용이 가능한 물품